

제413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4년2월29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5)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1)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8)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2)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5)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6)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4)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6)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2)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3)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4)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5)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6)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62)
1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3)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1)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8)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9)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7)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9)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49)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3)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7)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8)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9)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0)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1)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7)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1)
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2)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7)
3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5)
3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5)
3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0)
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8)
4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9)
42. 보험계리사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2)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3)
4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7)
45.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5)
4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2)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44)
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7)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0)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3)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6)
5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5)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7)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4)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0)
56.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김우신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100167)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2)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2)

상정된 안건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5) …… 5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1) …… 5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4) …… 5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8) …… 5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7) …… 5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9) …… 5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2) …… 5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5) …… 5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6) ... 5	5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4) ... 6	6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6) ... 6	6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1) ... 6	6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2) ... 6	6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3) ... 6	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4) ... 6	6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5) ... 6	6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6) ... 6	6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62) ... 6	6
1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3) ... 6	6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1) ... 6	6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8) ... 6	6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9) ... 6	6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7) ... 6	6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9) ... 6	6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49) ... 6	6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3) ... 6	6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7) ... 6	6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8) ... 6	6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9) ... 6	6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0) ... 6	6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1) ... 6	6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7) ... 6	6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1) ... 6	6
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2) ... 6	6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7) ... 6	6
3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5) ... 6	6
3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9) ... 6	6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5) ... 6	6
3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0) ... 6	6
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8) ... 6	6
4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9) ... 6	6
42. 보험계리사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2) ... 6	6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3) ... 6	6
4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7) ... 6	6
45.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5) ... 6	6
4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2) ... 6	6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44) ... 6	6
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7) ... 6	6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0) ... 6	6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3)	6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6)	6
5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5)	6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7)	7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4)	7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0)	7
56.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김우신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100167)	7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2) ...	7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2)	7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백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백혜련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전에요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직원분들이 있어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그리고 전문위원 박혜진, 입법조사관 이명자·이문범·나혜빈, 나와서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함께하실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인사)

의사진행발언요?

강민국 위원님 3분 주세요.

○강민국 위원 강민국 간사입니다.

먼저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국 간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또 인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력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간사 자리만 가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17대 국회부터 우리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해서 가장, 상임위 중에서 소통으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신사 상임위라고 소문이 났던 상임위인데 21대 하반기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

어서 1월 22일 날 강행한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장들을 강제 출석시켜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1월 29일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까지도 강행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개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라 해야 되나, 습관성 여당 패성이 아닌가. 굳이 개의 요구서까지 제출하면서 힘자랑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당명도 보면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것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1대가 남은 기간만큼은 이러한 그것 없이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홍성국 간사님 굉장히 존경하고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모든 걸 갖추신 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혜련 홍성국 간사님.

○홍성국 위원 선거가 있어도 경제는 이어지고 민생은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에도 선거를 앞두고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다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ELS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동산 PF 문제, 연일 한국 경제를 옥죄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슈도 장난이 아니지요.

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 내수 상권을 무차별 공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선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경제의 내부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쁜 선거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선거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총선 때문에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도 상정을 시켜서 논의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은 우선 상정을 해야지만 그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연 거고요.

정무위의 전통은 항상 일하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서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면서 일하는 정무위의 전통을 잇는 것이 오늘 회의를 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몰 법안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같은 일몰 법안도 있어서 반드시 법률안 상정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백혜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김종민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PF 월별 만기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있다 그리고 금감원은 또 금융위에 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되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월별 PF 현황을 정리한, 시장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융위하고 금감원에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언론에 다 공개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걸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니까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시장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PF 문제 관련해서 계속 만기 연장을 해 주는 게 총선 이후로 연장을 해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총선 전에 뭔가 위험요소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총선 이후에 PF가 몰려 버리면 금융위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만기현황 자료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과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입법부의 의견을 또 조언을 들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PF 현황 자료를 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혜련 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5)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1)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3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8)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59)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2)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5)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6)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4)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36)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2)
1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3)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4)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5)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56)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6062)
1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3)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21)
2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38)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79)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7)
2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99)
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49)
2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63)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7)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8)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9)
3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0)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31)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887)
3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1)
3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02)
3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7)
36.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65)
3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89)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05)
3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20)
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8)
4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19)
42. **보험계리사법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22)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63)
4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27)
45.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75)
4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22)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644)
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07)
49.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10)
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3)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756)
5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5)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17)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4)

5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050)

56.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김우신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67)

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002)

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112)

(11시17분)

○위원장 백혜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8항까지 이상 5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송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의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를 출신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위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그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여섯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해 대도시입니다. 이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의안번호 21254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6개의 법안을 통해서 국가가 민간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와 각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순위 유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그 진료비용을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선순위 유족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안번호 21254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12543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9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을 다른 법안과 같이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높은 가격으로 독점 공급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 불이익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 및 갱신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입증자료도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기간과 가맹사업 계약기간의 불일치로 급작스러운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계약과 가맹계약 간의 기간 일치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높은 가격의 물건 강제, 가맹본부의 일방적 가맹계약 해지 등을 방지하여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상생관계여야 하지만 현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불공정 관행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는 매년 증가하여 33

만 개가 넘었습니다. 가맹사업이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셈입니다.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가맹사업자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아무쯇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강훈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의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 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2명에 의해 105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고 금융 당국이 이를 적발했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어 직접 제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었음에도 금융 당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법 별표에 구체적인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캐피탈사 등의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 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여신전문금융업법 외에도 동일 취지의 조항이 신탁 분야에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오늘 상정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의 법안 취지를 살피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허숙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숙정 의원 존경하는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의 수행 및 법상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성명, 주소, 연락처, 검침일, 납기일 등을 포함한 수신료 고객 정보와 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여부 등을 포함한 수신료 면제자 정보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평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서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의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정무위 회의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나와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보훈부에서 제출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우대하는 한편 현저히 부진한 기관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병역의무의 가치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등 6개 소관 58건의 의안 중 일부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간략히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주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행위로 납품업자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정액과징금과 과징금 상한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품업체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는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마련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억제와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인 실손배상의 예외라는 것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보호법 개정안은 각 부보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여 금융업권 공통 0.5%의 현행 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1998년도에 마련된 규정이므로 향후 업권별 적정 요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등 사전준비를 거쳐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한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대상 기관 및 금융 관련 협회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와 파견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파견받은 인력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파견인력 운용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파견인력 운용에 대한 통제 신설 여부 및 방식은 민간인력 활용의 필요성, 과도한 민간인력 파견으로 인한 민간으로의 인건비 전가 및 이해충돌의 가능성,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필요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파견인력 현황의 국회 보고는 금융감독원이 파견인력 활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하고 파견인력 활용에 따른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외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백혜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상정된 57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1소위 및 2소위에 각각 회부하고 1건의 보험업법 관련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민국	강성희	강훈식	김성주
김종민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백혜련	양정숙	오기형	유의동
윤주경	이용우	조웅천	최종윤
홍성국	황운하		

○청가 위원(2인)

송석준 윤창현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강은미 송기현 허숙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권태현
전문위원	박혜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청년정책기획관	김진남		
국무총리비서관	이충현		
정무협력비서관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기획조정실장	이남일		
보상정책국장	황의균		
복지증진국장	최병완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기획조정관	전성복		
경쟁정책국장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겸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산업국장	신진창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안창국		
예금보험공사부사장	유대일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4. 1. 30. 김도읍·유경준·권명호·황보승희·권성동·박형수·전주혜·윤한홍·조수진·김형동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 30. 윤창현·이용·송석준·윤주경·이종성·김승수·윤한홍·김희곤·성일중·최승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우신구 의원 대표발의)

(2024. 2. 1. 우신구·김예지·임병현·이종배·김성원·박대수·최형두·이채익·김은희·권명호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4. 2. 2. 이종배·송석준·김성원·윤창현·정운천·박대수·홍문표·성일중·우신구·장대식·이양수 의원 발의)

2월 5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4. 2. 7. 강기윤·김희곤·박덕흠·김예지·서일준·백종현·최재형·조명희·이용호·이종성·김태호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4. 1. 25. 전봉민·서병수·이주환·이현승·안병길·김희곤·박수영·장제원·정동만·김도읍·조정대·김미애·백종현·윤재옥·하태경·박재호·전재수·황보승희·최인호 의원 발의)

1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24. 2. 23. 김교홍 · 이성만 · 정일영 · 유동수 ·
허숙정 · 허종식 · 이동주 · 배진교 · 박찬대 ·
신동근 의원 발의)

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국무조정실	-	-	-	1	1	-
국가보훈부	-	-	-	1	-	1
공정거래 위원회	-	-	-	1	-	2
국민권익 위원회	-	-	-	2	-	-
금융위원회	-	-	-	-	-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	-	-	-	2